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8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2.

(3) 회 부 일 : 2025. 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의4).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의4)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 ○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특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u>2030. 12. 31.</u>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공포한 날 (윤준병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2. 12. 발의(의안번호 8080),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 개정안은 벤처캐피탈 등의 모험자본 회사가 중소기업 중 소재·부

품·장비 분야의 특화선도기업¹⁾에 신규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 제13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 회사²⁾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향상, 신제품 개발 촉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임. 특히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될 수 있음.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에 따라 한시법이었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상시법화하였으며 (2020. 4. 시행),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면서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었고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지출 실적은 없는 상황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도입	-	-	-	-	-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동 특례에 따른 투자대상인 특화선도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중, 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분야 기본역량과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2025년 4월 기준 총 101개 기업³⁾이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개정안은 본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 기업 등에게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을 확보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반도체의 생산·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R&D,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활용 실증평가 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3) 소재분야 35개사, 부품분야 42개사, 장비분야 24개사
(’21년 22개사 → ’22년 21개사 → ’23년 23개사 → ’24년 22개사 → ’25년 13개사)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2025. 4.

둘째, 본 제도는 한 차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제도 도입 이래 조세지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본 조세특례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적용실적이 없어 제도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1기) 평균 113.7억/3.5년, (2기) 평균 87.5억/3.4년, (3기) 평균 112.2억/3.5년, (4기) 평균 91.2억/3.5년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154